



2 개호보험

2-2 개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

(1) 어떠한 때

65 세 이상으로 개호가 필요한 경우, 또는 40 세~64 세에 노화로 기인한 특정질병(16 종류)에 따라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한해서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2) 개호인정이 필요

개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구청촌의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, 개호의 필요도에 대해서 「개호인정 필요」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. 신청을 받고 인정조사가 행해져 그 결과와 의사의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개호인정 심사회에서 개호의 필요도가 판정됩니다. (지원 필요 1~2, 개호 필요 1~5 의 7 단계)